

땡큐시니어 운영방침

◆ 이용자의 모집방법 ◆

가. 이용자

- (1) 65세 이상노인 또는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
- (2)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
- (3) 일반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
- (4)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
- (5)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및 치매증상의 유지 · 증진이 필요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
- (6) 그 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및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관장(대표자)이 인정하는 자
- (7) 독거하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

나. 당해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.

다.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, 땡큐시니어 홈페이지 및 블로그(www.thankyousenior.com , <http://blog.naver.com/thankyousenior>)를 통한 온라인 기관홍보
- (2) 상담 -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
- (3) 기존 수급자(보호자)의 지인소개
- (4)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, 관내 서비스 수급자를 파악한다.
- (5) 기관 리플릿 제작 또는 전단지 광고 및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.

◆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◆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

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 더불어,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시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
나. 계약목적

- (1)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(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다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(1)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(2) 기관은 전월 1월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 이전에 정산하고,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.
- (3)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0일 이전에 납부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(4)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 (신한은행 110-284-975867, 예금주: 땡큐시니어)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
- (5)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
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

[별표1] 재가급여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4.1. 기준)

◆ 재가급여 월 한도액

구 분		금 액(원)
월 한도액	1등급	2,069,900원
	2등급	1,869,600원
	3등급	1,455,800원
	4등급	1,341,800원
	5등급	1,151,600원

◆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금 액(원)	
일반	15 %	
기초생활수급권자	0 %	
기타 의료수급권자	소득 0-25%이하	6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소득 25-50%이하	9%
저소득층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	

◆ (방문요양)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

구 분		(방문당) 금 액(원)
방문요양	30분 이상	16,630원
	60분 이상	24,120원
	90분 이상	32,510원
	120분 이상	41,380원
	150분 이상	48,250원
	180분 이상	54,320원
	210분 이상	60,530원
	240분 이상	66,770원

◆ (방문목욕)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

구 분		(방문당) 금 액(원)
방문목욕	목욕차량(차량)이용	84,670원
	목욕차량(가정)이용	76,340원
	목욕차량 미이용	47,670원

라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에 관한 사항

(1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- 가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나) 수급자(보호자)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- 가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나) 수급자의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다)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마.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

공개 하지 않는다.

- (1)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(2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(3)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(4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(5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(6)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성적인 행동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계속해 서비스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(7) 그 밖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
◆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◆

가.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(1)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(2)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(3) 수급자의 건강상태,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

나.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‘센터이용변경계약서’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

◆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◆

가. 서비스의 내용

- (1)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- (2) 방문목욕 : 2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나. 서비스의 세부사항

- (1) 신체활동 지원
 -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기저귀 교환, 식사 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,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
- (2) 일상생활(가사)지원서비스
 -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장보기 등
- (3) 개인 활동 지원

- 외출동행, 병원안내 및 동행, 산책동행, 각종 정보안내,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
- (4) 정서지원
 -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- (5) 치매관리지원
 - 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 진행, 행동변화 대처 등
- (6) 응급서비스
 - 응급상황 대처 등
- (7)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
 -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.
 -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와 수급자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은 하지 않는다.
- (8) 방문목욕
 -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, 입욕 시 이동보조, 몸 씻기, 머리감기기, 머리 말리기, 옷 갈아입히기,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.

다.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

- (1)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.
- (2)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.
- (3)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없다.

라.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- (1)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,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(2)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◆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◆

가.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

- (1)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,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.
- (2)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,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.

나. 병원진료

- (1)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- (2)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 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,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◆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◆

가. 배상책임

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- (1)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(2)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나. 면책 범위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- (1)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- (2)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- (3)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- (4)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다. 기관장(대표자) 또는 시설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.

